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92
------------	------

2017. 8. 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8.30. 상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서울비엔날레 행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내 전담부서(인력)를 설

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주요사업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조성 및 운영
    - 주제, 도시 전시 기획 및 제작 설치
    - 현장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참여
    - 국제스튜디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작업 및 홍보

○ 출연의 필요성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임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담론을 다루는 국제행사이자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필요
- 다각적 홍보 및 후원금 등 민간유치 병행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조 례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기 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라.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마.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가. 동의안 제출경위

- 이 동의안은 2019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디자인재단(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과 세계 도시 간의 도시·건축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교류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년(홀수년) 단위로 개최되며,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개월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세운상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예정임(붙임참조).

### 다. 출연 타당성 검토

- 이 출연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전년도부터 사전에 준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3억원으로 전년도 출연금(55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며<sup>1)</sup>, 대부분 사무국 운영비 및 자문위원 참석사례비, 회

1) 출연금 중 대부분이 사무국 인건비(2억8천만원)이며 기존 인건비(약 4억6천만원)에 비해 감액된 규모로 사무국의 인력 축소가 예상됨

의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임.

-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2019년도 서울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해 출연금 외에 1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감독 및 운영위원회, 큐레이터 운영과 홍보 및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임.

〈2018년 서울비엔날레 소요예산〉

구분	예산	세부내역
출연금 (서울디자인재단)	280,000천원	- 사무국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20,000천원	- 서울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비 · 참석사례비, 회의운영비, 방한여비
소 계 (A)	300,000천원	
사무관리비 (도시공간개선단)	140,000천원	- 총감독 운영비 · 업무사례비, 국외업무여비
	16,800천원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비 · 참석사례비, 회의운영비
	138,250천원	- 큐레이터 운영비 · 업무사례비, 국외업무여비
	50,000천원	- 기반사업 · 홈페이지 운영, 그래픽디자인
	589,550천원	- 홍보 및 전시 · 온오프라인 및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전시 등
국외업무여비 (도시공간개선단)	65,4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 국외여비
소 계 (B)	1,000,000천원	
합 계 (A+B)	1,300,000천원	

- 이는 2019년 서울비엔날레 개최준비를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축소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출연에 앞서 사무국과 도시공간개선단간의 역할정립, 2019년 서울비엔날레 행사의 효율적 기획·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과 로드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2017 서울비엔날레 종료 후 행사준비 및 개최, 조직운영, 예산집행과 성과 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사무국 운영 방안 또는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서울비엔날레 지원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그러나 올해 행사 종료 직후 사무국의 행사결과 보고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절차가 남아있고, 조직신설 시 이에 대한 인사 및 재정부담 문제가 예상되는바, 단기적으로는 계획안과 같이 사무국으로의 출연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짐.

○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디자인재단 비엔날레 사무국의 운영은 서울비엔날레 운영조직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 사료됨. 내년도에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운영·조직·재정투자 방안의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sup>2)</sup>

※ 참고로, 이 사업과 같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sup>3)</sup>되어 있어 이번 출연은 시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2) 이 출연 동의 건은 시의회 예산심의와 별도로 예산심의에 앞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의 규모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됨.

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74호, 2016.6.30.) 제4조제1항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92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비엔날레 행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내 전담부서(인력)를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 다.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512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282호)



## 나. 주요사업(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조성 및 운영
    - 주제, 도시 전시 기획 및 제작 설치
    - 현장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참여
    - 국제스튜디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작업 및 홍보

##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임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담론을 다루는 국제행사이자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필요
- 다각적 홍보 및 후원금 등 민간유치 병행 필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조 례

###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다. 기 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라.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 마.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박미진 (☎7616)